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98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민형배・이정문・윤준병

이수진 · 김문수 · 정동영

이언주 • 민홍철 • 조인철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 재건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빈곤 속에서 해외 원조를 수차례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인적교류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7,101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6조, 제18조의2 및 제24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 사업 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 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 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 도록 하여야 한다.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 력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생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략) ② 위원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 <신 설> 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 력 사업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 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 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 <신 설> 체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국 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 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 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 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 로 정한다.